5강 : 조선시대 유교관과 성범죄

성윤리가 강조되었던 조선시대에도 간통이나 강간 등 각종 성범죄가 있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남녀가 밥상에서 마주앉는 일'마저도 간통으로 생각할 정도였기 때문에 간통에 걸려드는 경우가 지금보다 더 많았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간통이라 하면, 흔히들 결혼한 기혼 남녀가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자기의 의사에 따라 불법적인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말하자면 부부간의 정조가 문제되는 것이지, 미혼 남녀간의 성관계까지 간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간통의 개념은 지금과는 달랐다. 조선시대에는 남녀 모두 기혼 유무를 막론하고 혼외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모두 간통으로 취급했다. 미혼 남녀간의 성관계도 문제가 되었다는 말인데, 미혼 남녀의 경우는 기혼 남녀의 간통에 비해 가볍게 처벌 받기는 했지만 엄연한 간통으로 인정되었다.
최근까지 간통죄가 성립하려면 결혼의 파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고소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요건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 간통죄는 부부상호간의 고소 여부에 상관없이 적발 즉시 처벌 대상이었다. 조선시대에는 간통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까지 국가가 개입하여 처벌할 정도로 성적 문란함을 엄격히 단속하고자 했다.
조선시대 성모럴에서는 현장에서 간통하는 남녀를 처벌하지 않은 배우자 또한 비난의 대상이었다. 물론 여기서 배우자란 남편의 경우에만 해당되지만, 아무튼 간통 현장에서 부인과 간부를 죽였더라도 비난의 대상이 아니었고 죄가 탕감되었다. 오히려 묵인했다 하여 벌을 받을 정도였다. 부녀자들의 간통은 장형杖刑과 같이 매를 맞는 일시적인 형벌만으로 그치지 않았다. 여성들의 성적 분방함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양반사족 부녀자들은 서민 여자들보다 도덕성이 요구되어 같은 간통을 저질렀다하더라도 극형에 처해지는 일이 있었다. 또한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은 간통한 것으로 의심만 받아도 그에 따른 불이익이 주어졌다. 음행녀 명부인 「자녀안」이나 「유녀적」에 이름이 기재되어 평생 간음녀로 낙인찍히거나 관비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여자들의 간통은 결혼 이전에는 파혼의 사유가 되었고, 결혼 이후에는 이혼의 사유가 되었다. 반면 남자들은 장모와 간통했을 경우에만 이혼 대상이 되었다.
조선시대는 신분사회인 만큼 강간죄에 대한 처벌도 신분에 따라 달랐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처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강간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법대로 처벌된 경우는 거의 없고 대체로 감형을 받았다. 특히 성리학적 윤리가 미약하였던 조선전기에는 가해자가 왕실의 종친이나 공신이었을 경우, 이들의 특수한 신분과 지위로 말미암아 대체로 감형을 받을 수 있었다.
강간을 당한 후 피해자의 행실이 가해자의 형량에 영향을 주는 면도 있었다. 세종 때 무려 39명의 남성들과 간통하여 파문을 일으킨 감동을 맨처음 강간한 김여달은 감형되어 화간의 형률인 장 80대로 처벌받기도 했다. 감동과 같은 경우는 음탕한 여자로 취급받아 오히려 상간한 사람들이 모두 용서를 받은 케이스인데, 흔히 있는 일은 물론 아니었다.
그런데 중종 이후, 여성들의 재혼이 금지되고 수절이 강조되면서 강간범죄에 대한 처벌도 점차 무거워졌다. 조선시대 남녀가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갖는 화간은 장 80대에 그쳤지만,

강간은 극형인 교형이었다. 그리고 강간미수는 장 100대, 유배 3천리에 해당하였으니 그 죄질의 무거움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12세 이하 어린여자 아이를 강간할 경우에는 설사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강간으로 취급하여 교형에 처해졌다.
친족간의 강간은 더욱 처벌이 무겁다. 할아버지의 첩, 백숙모, 자매, 아들 손자의 며느리, 형제의 부인이나 딸과의 화간은 피를 나누지 않았더라도 교형이었고, 8촌내에서 벌어지는 화간은 교형, 그외 강간은 혈연의 원근과 상관없이 교형보다 무거운 법정 최고형인 참형에 처해졌다. 말하자면 근친 강간은 예외없이 사형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신분제 사회였던 만큼 친족간의 근친상간보다 노비와 주인간의 노주 강간이 훨씬 금기시되었던 시대였다. 만일 노비가 주인을 강간했을 경우에는 교형 보다 무거운 참형이었고 설사 화간이라 할지라도 참형이었다. 물론 이같은 경우는 대체로 남자 종이 여자 주인을 강간할 경우에만 해당하고 남자 주인이 여종을 강간했을 때에는 문제되지 않았다. 게다가 남존여비 사상으로 강간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감형되는 경우도 많았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았을까? 당시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풍기 및 강상과 관련된 간통이나 강간에 의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처벌 범위가 다양하고 신분에 따라 달랐다는 점이 지금과 다르다. 풍기문란과 강상에 어긋나는 것을 매우 엄격히 규제하였던 당시의 사회 분위기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는 "치마를 당기고 밥상을 마주 대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까지 여겨졌던 시대였다. 그만큼 남녀의 성적 문란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하고자 했다. 따라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다른 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거웠는데 성범죄의 처벌은 죄질에 따라 다르나 5형 중 대체로 장형이나 사형을 언도 받았다. 특히 일반 범죄에서 장형을 받을 때 여성들은 홑옷을 입고 맞았는데, 간음죄일 경우에는 옷을 벗고 형벌을 받게할 정도로 모욕감을 주기도 했다.